

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¹

신익순² · 오구균²

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¹

Ick-Soon Shin², Koo-Kyoon Oh²

요 약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 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 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 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주요어 : 자연공원시설, 자연공원법 개정안

ABSTRACT

A definition on the natural park facilities and pro-environmental concept were defined in this study. The natural park law which is the basic regulation about the facilities in the park was reviewed. Related laws about permit standard for facility construction in the park, definition and types of park facilities and maintenance of them were studied in terms of pro-environment. These laws and regulations were compared with those in USA, Japan and Taiwan to study how natural park facilities built pro-environmentally. Problems with the loc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park facilities were studied to understand environmental amendment. These reviews could be used as a guideline to promote the induction of pro-environmentalism with related to natural park law and regulations.

KEY WORDS : NATURAL PARK FACILITIES, AMENDMENT PROPOSAL FOR NATURAL PARK ACT

1 접수 5월 30일 Received on May 30, 2000

2 호남대학교 도시·조경학부 School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 Kwangju 506-714, Korea

서 론

자연공원(Natural Park)이란 자연생태계와 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이용·관리되는 공원으로서(오구균과 이경재, 1996)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공원의 대표적인 예인 국립공원(National Park)은 1872년 미국에서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세계 최초로 지정되었다. 국내에서는 1967년에 지리산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18개소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NPA : National Park Authority)에 의해(경주와 제주도는 제외) 관리되어지고 있다. 자연공원시설(Natural Park Facilities)이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 설치되는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에 그 종류를 8개 군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일본의 자연공원시설의 종류에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탐방안내시설(피난소, 안내소, 전망시설), 환경기초시설(오수처리시설), 생태계보호시설(식생복원시설) 등이 명시되어 있다(신익순, 1999).

환경보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자연공원의 관리이념이 자연생태계 및 풍경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한 관리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친환경성이란 용어는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든 개발행위와 경제활동에서 환경을 중요하게 배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자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친환경성의 개념은 1980년대 말부터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고, 이후 진전된 개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연공원시설의 친환경성이란 자연공원의 자원 및 이용자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도입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자연계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 내에서 최소화한다는 개념으로 자원보전성과 환경조화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원보전, 주변환경과의 조화, 지속가능성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오구균 등,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성과 관련된 국내·외 자연공원시설 관련법들의 현황(U.S.D.I. NPS, 1992, 1988; 일본국립공원법, 1994~1995; 油井正昭,

1987; 蔡伯祿, 1997; 日本環境廳, 1996)과 국내 관련법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공원시설의 친환경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연공원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관련법규 조사

자연공원법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친환경성 측면에서의 공원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일반사항, 시설물 설치, 시설물보호·유지 의무 및 시설물 관련 행정 등의 항목으로 구별하여 조사·분석하고,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친환경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미국(U.S.D.I. NPS, 1992, 1988), 일본 및 대만 등 외국의 국립공원시설물과 관련된 법규 또는 기준을 조사하여 국내·외 관련법규를 비교·분석하였다.

2. 법제 개선방향

친환경성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연공원의 지정목적 및 관리목표와 부합하는 친환경적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선방안을 공원시설의 종류, 용도지구 내 시설 허용행위 및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현행 자연공원법시행규칙상에서의 공원시설물 관련사항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자연공원시설의 친환경성 관련 국내 법제 현황

(1) 일반사항

자연공원 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자연공원법이 있으며, 기타 공원시설물의 종류, 설치·관리 기준 등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규로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하여 환경정책기본법,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산림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소방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다수의 실정법이 있다.

(2) 법제 검토

①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자연보존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허용행위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이고(제1호 나목,다목), 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허용행위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와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방·호안·방화·방책·보호시설 등의 설치이며(제2호 다목, 바목),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

② 시설 분류체계

자연공원시설의 구분체계는 법령의 규정, 설치목적, 투자재원, 시설입지, 관리주체 등 활용기준에 따라 다르며, 시설물의 유형 및 종류도 다양한 체계로 분류되어 있다(이재화, 1993).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에 나타난 도로를 비롯한 58개의 공원시설은 각 시설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교통·운송시설을 포함한 13개 종류로 구분되며, 이는 시설의 기능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설, 편익시설의 3개 군으로 묶을 수도 있으며(노철현, 1995), '국립공원 시설편람'의 '공원시설유지관리지침(1997. 7. 1)'에 제시된 시설물의 구분체계는 각종 시설을 44개의 시설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건물 등 8개의 시설물 종류로 구분하여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③ 친환경성 검토사항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시 이용, 관리 목적 외에 공원의 생태계 보호, 경관보존의 목적을 추가하고, 자연공원시설의 종류, 시설물의 삭제 및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의 보호·관리'의 문구에서 '공원' 대신 구체적인 '공원 내 자연 및 문화자원'으로의 대체하여 보호·관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시설지구 안 녹지

의 정의에서 '조경'이란 용어가 모호하므로 삭제하는 대신 탐방객 휴양의 목적을 명시하고, 탐방편의시설에 탐방객안내소, 자연관찰로 등 탐방편의시설 포함이 필요하며, 집단시설지구 녹지의 대상을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 지역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전체 집단시설지구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공원시설 종류에 탐방안내시설, 위생처리시설, 생태계보호시설, 식재 등의 추가와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련 규정을 친환경성과 생태계보호 원칙을 토대로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보완이 필요하고, 시설물의 종류, 상태에 따른 도장시기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용도지구 내 허용행위기준 중 공원시설과 관련된 일부 추상적인 문구 대신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자연공원시설과 관련된 국내 법제의 친환경성 검토를 종합해 보면 Table 1과 같다.

2. 공원시설의 친환경성 관련 해외 법제 현황

(1) 미국

① 법규 현황

미국에서의 자연공원 관련 법규는 한국과 일본의 자연공원법이나 대만의 국가공원법처럼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공원청(NPS : National Park Service)에 의해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국가공원청조직법(National Park Service Organic Act),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국가사적보전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국가공원내광물채굴법(Mining in the National Parks Act), 미국장애자법(American Disability Act), 미국고기념물법(American Antiquities Act),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연방고용 및 시설법(Federal Employees and Facilities Act),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 건축장애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복원법(Rehabilitation Act), 범람원관리규정(Floodplain Management: 42 USC(United States Code)4321), 습지보호규정(Protection of Wetlands: 42 USC 4321) 등의 관련 법규가 있다.

② 시설물 계획 및 설치 법규

건축장애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42 USC 4151 et seq.)과 복원법(Rehabilitation Act: 29 USC 701 et seq.)에서 국가공원내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관련된 정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람원관리규정

Table 1. Pro-environmentally related regulations about natural park facilities

항 목	법 령	내 용	검 토 내 용	
정의	공원 시설 (종류)	자연 공원 법 제2조 제7호	'공원시설' 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 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공원의 이용, 관리 측면만 언급되고, 생 태계보호 등 친환경성에 대한 언급 없 음
		자연 공원 법 시행령 제2조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의 종류(8종)와 시설규정을 명시	· 체육·휴양 및 편익시설, 문화시설종 류 중 일부가 국립공원구역 내에 설치하 는 것이 공원지정목적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삭제, 검토 · 탐방편의시설, 환경기초시설, 생태계 보호시설, 식재 등 신설과 시설물예시 필요
	공원 시설 계획	자연 공원 법 제2조 제5호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 은 공원을 보 호·관리하고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원계획' 에 속함	보호·관리의 대상을 공원이라고만 명 시함으로써 보호·관리의 구체적 객체 가 누락되어 있음
	집단 시설 지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 1항 제4호	'집단시설지구' 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 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입 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 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 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으로서 공 원계획에 의해 결정된 4가지 용도지구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 구, 집단시설지구) 중의 하나이다.	보호·관리의 대상을 공원이라고만 명 시함으로써 생태계,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 그 구체적인 객체가 누락되어 있음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 조 제1항	집단시설지 구의 세분 4. 녹지 : 조경 및 공원 의 보호·관리를 위한 소규모의 공중변소· 안내소 등의 공공시설 이 필요한 지역	· '조경' 이란 용어가 모호하므로 삭제 하는 대신 탐방객 휴양의 목적을 명시하 고, 시설 종류에 탐방객안내소를 포함 · 보호·관리의 대상을 공원이라고만 명시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객체가 누락 되어 있음 녹지란 조경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소규모의 공중변소·안내소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명시되 어 있는 바, 본 규정은 녹지의 대상지역 을 공공시설지의 일부 구역으로 한정하 고 있음
			5. 기타시설지 : 그 외 기 타시설이 필요한 지역	'기타시설이 필요한 지역' 에서 '필요 한' 의 자의적인 해석이 광범위하므로 그 필요성의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음
시설 물의 종류	교통· 운송 에 필 요한 시설	자연환경보 전법 제22 조 제1항 제5호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 하여 자연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본 자연보도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 설 중 교통·운송에 필요한 시설의 일 종인 탐방로에 해당함

Table 1. (Continued)

항 목	법 령	내 용	검 토 내 용
편익시설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홍보시설과 보전지역의 자연환경을 안내하는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설 중 탐방편의에 안내시설이 누락되어 있음
보호 시설	자연 환경 보 전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4호	'기타 자연환경보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 식생복원시설과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포함된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중 보호시설에 공원 내 자원보호를 위한 식생복원시설과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예시되어 있지 않음
시 설 물 설 치 기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공원시설별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공원시설공사 품질관리규칙' (국립공원관리공단 규칙 제60호, 1993)과 '공원시설유지관리규칙' (국립공원관리공단규정집, 시설부문 I)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함
시 설 물 관 리 기준	공원시설유지관리규칙 (국립공원관리공단 규칙 제34호, 1990) 제19조 제2항	시설물은 2년~3년에 1회씩 전면 재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종류, 상태에 따라 도장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부분 도장도 가능하다.	재도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재도장의 미실시로 인한 폐해가 예상됨
용도지구 내 허용행위기준	자연 공 원 법 제16조 제2항	<p>자연 보존 지구 (제1호 나목)</p> <p>자연 보존 지구 (제2호 다목)</p>	<p>'최소한의 공원시설'은 추상적이므로 최소한의 공원시설 예시 필요</p> <p>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생태계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인위적인 조림, 육림 및 임도 설치하는 지구지정 목적과 상치됨</p> <p>'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이 애매하므로 이에 대한 시설 종류, 규격 예시 필요</p>
		<p>제1조 바목</p> <p>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p>	
		<p>자연 환경 지구 (제2호 다목)</p> <p>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 중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을 명시</p>	

(Floodplain Management: 42 USC 4321, Executive Order 11988)과 습지보호규정 (Protection of Wetlands: 42 USC 4321, Executive Order 11990)에서는 공원구역내에서 자연적 위협으로부터 회피될 수 있는 부지계획 시설 (site planning facilities)의 일종인 범람원 및 습

지개발시의 요구 사항들을 본 규정 및 이들 각각의 이행 지침이 명시하고 있다.

(2) 일본

① 법규 현황

일본에서의 자연공원은 國立公園, 國定公園 및 都

道府縣立自然公園 등으로 구분되고, 국립공원 또는 국정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자연공원법이 있는 점은 국내와 같다. 기타 시설물의 종류, 설치·관리 기준 등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규로서는 首都圈整備法, 中部圈都市整備區域·都市開發區域 및 保全區域의 整備 등에 관한 法律, 近畿圈近郊整備區域 및 都市開發區域의 整備·開發에 관한 法律, 近畿圈保全區域整備에 관한 法律 및 多極分散型國土形成促進法 등이 있으며, 관련 條例로서 兵庫縣의 全縣全土公園化推進에 관한 條例를 들 수 있다.

② 시설물 종류

일본의 자연공원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공원 시설의 종류는 Table 2와 같다.

(3) 대만

① 법규 현황

대만에서는 국립공원이란 명칭 대신 '國家公園'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자연공원법이 있는 반면, 대만에서는 독립적인 국가공원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기타 시설물의 종류, 설치·관리 기준 등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규로서는 內政部國家公園計劃委員會組織規程, 國家公園管理處組織通則, 國家公園計劃內容標準, 陽明山國家公園保護利用管制規則, 有關建築及土地利用之規定, 生態保育區及自然保留區保育措施, 文化資產保存法, 野生動物保育法, 發展觀光條例, 風景特定區管理規則, 森林法, 區域計畫法, 都市計畫法, 建築法 및 廣告物管理辦法 등이 있으며, 關聯 參考資料로서 單行本인 國家公園經營管理相關

Table 2. Types of natural park facilities in Japan

시설 종류	시설명
교통· 접근시설	도로, 교량, 이용자를 위한 차고, 주차장, 운송시설(공원 내 노선을 정하여 이용객을 운송하는 자동차, 선박, 수상비행기, 철도 등의 계류시설), 급유시설 및 승강기
상업시설	공중목욕탕, 양어시설
숙박시설	숙사
공공· 업무 시설	의료구급시설
휴양· 편익· 체육시설	야영장, 광장, 원지, 휴게소, 운동장, 수영장, 선착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승마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운동장, 수영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승마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시설 및 야외극장
탐방안내시설*	피난소, 안내소, 전망시설
환경기초시설*	오수처리시설
생태계보호시설*	식생복원시설
이용객보호 및 안전시설	사방시설, 양어시설, 방화시설

*국내 자연공원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 종류임

Table 3. Types of national park facilities in Taiwan

시설 종류	시설명
교통· 운송시설	도로, 주차장
상업시설	식당
숙박시설	호텔, 모텔
공공· 업무 시설	관리사무소
휴양· 편익시설	전망대, 매점
탐방안내시설	탐방객안내소, 등산로, 산악보도(人車分道路), 자연관찰로, 나비관찰로, 안내판, 수목해설판, 계도안내판, 환경해설판
환경기초시설	-
생태계보호시설	생물이동통로(개, 원숭이 등)
이용객보호 및 안전시설	경계책

Table 4.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of natural park facil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Taiwan and USA

국가	법제 특성	관련 법제	
		법규	기준/지침
한국	국립공원 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자연공원법이 있으며, 기타 시설물의 종류, 설치·관리 기준 등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외 다수의 관련 법규들과 기준/지침이 존재함	자연공원법(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산림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소방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공원구역내산림관리지침(내무부 지침, 1991),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1998), 공사업무집행규정(국립공원관리공단규정 제47호, 1993), 공원시설공사 품질관리규칙(국립공원관리공단규칙 제60호, 1993), 공원시설유지관리규칙(국립공원관리공단규정집, 시설부문 I) 등
일본	일본에서의 자연공원은 國立公園, 國定公園 및 都道府縣立自然公園 등으로 구분되며, 국립공원 또는 국정공원 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자연공원법이 있는 점은 국내와 유사함. 기타 시설물의 종류, 설치·관리 기준 등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법규들과 조례 및 기준/지침이 존재함	自然公園法(기본법) 首都圏整備法, 中部圏都市整備區域·都市開發區域 및 保全區域의 整備 등에 관한 法律, 近畿圏近郊整備區域 및 都市開發區域의 整備·開發에 관한 法律, 近畿圏保全區域整備에 관한 法律, 多極分散型國土形成促進法 등 (조례) 兵庫縣의 全縣全土公園化推進에 관한 條例	국립공원사업 중 테니스코트의 취급요령에 대하여(1995), 국립공원 내(보통지역 제외)에서의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에 대하여(1996), 富士箱根伊豆國立公園 伊豆諸島地域管理計劃基準(환경청자연보호국 南關東지구국립공원·야생생물사무소, 1995. 3) 등
미국	국내 경우의 자연공원법이나 국립공원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청(NPS : National Park Service) 기준에 의해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이 기준의 본문내용 속에 각 관련법규가 명시되어 있음	국가공원청조직법(National Park Service Organic Act), 국립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국립사적보전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국립공원내광물채굴법(Mining in the National Parks Act), 미국장애자법(American Disability Act), 미국고기념물법(American Antiquities Act),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연방고용 및 시설법(Federal Employees and Facilities Act),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건축장애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복원법(Rehabilitation Act), 범람원관리규정(Floodplain Management: 42 USC 4321), 습지보호규정(Protection of Wetlands: 42 USC 4321) 등	국가공원청(NPS : National Park Service) 기준(standards)

Table 4. (Continued)

국가	법제 특성	관련 법제	
		법규	기준/지침
대만	국립공원이란 명칭 대신 '國家公園'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공원 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자연공원법이 있는 반면, 대만에서는 독립적인 국가공원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기타 시설물의 종류, 설치·관리 기준 등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규들과 기준이 존재함	國家公園法(기본법) 內政部國家公園計劃委員會組織規程, 國家公園管理處組織通則, 國家公園計劃內容標準, 陽明山國家公園保護利用管制規則, 有關建築及土地利用之規定, 生態保育區及自然保留區保育措施, 文化資產保存法, 野生動物保育法, 發展觀光條例, 風景特定區管理規則, 森林法, 區域計畫法, 都市計畫法, 建築法 및 廣告物管理辦法 등	陽明山國家公園管理處業務簡報(監察院內政委員會, 1997. 3), 公廁清潔維護管理指導手冊(行政院環境保護署, 1998. 6) 등
기타	북한의 '도시경영법' 제57조에 공원 내 시설물설치의 제한 규정이 있음		

法規彙編(內政部營建署 陽明山國家公園管理處, 1991. 6, 574쪽), 陽明山國家公園管理處業務簡報(監察院內政委員會, 1997. 3, 21쪽), 國家公園生態保育相關法規摘要(墾丁國家公園管理處, 1997. 8, 90쪽) 및 公廁清潔維護管理指導手冊(行政院環境保護署, 1998. 6, 8쪽) 등과 研究報告書인 自然保育政策執行之研究-陽明山國家公園的個案分析(倪櫻玲, 1989.7, 國立中興大學公共政策研究所, 154쪽), 國家公園區域內國家公園法與其他相關法律競合適用之研究(林山田 外, 1989.12, 中華民國自然生態保育協會, 165쪽), 陽明山國家公園 觀光遊憩分析模式之建立(1997.3, 群琿地理資訊顧問股份有限公司, 40쪽) 및 鹿角抗溪取水堰魚道設置研究(沈世傑, 1991.6, 中華民國自然生態保育協會, 33쪽) 등이 있다.

② 시설물 종류

國家公園法 제14조8호에서 명시한 '공원의 一般管理區域遊憩區내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국가공원 관리처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대만에서의 유일한 시설물 관련 규정이며, 한국과 일본의 자연공원법 공원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만의 國家公園 관련 법규에서는 공원시설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대만에서의 현지 답사(1998. 11) 결과를 토대로 한 공원시설

물의 종류는 Table 3과 같다.

(3) 국내·외 국립공원 시설 관련 법제 비교

국내·외 국립공원 시설 관련 법제의 비교분석은 Table 4와 같다.

3. 자연공원시설의 친환경성 검토

자연탐방/관찰로, 자원해설·안내시설 등 공원자원탐방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시설명과 공원관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명이 상이하여 통일된 시설명칭 정립이 필요하며, 각 공원내 통과도로나가 많아 생물이동에 방해와 주고 있다(박소영, 2000). 생태계복원, 이동통로 등 생태계 보호·보전을 위한 시설이 없고, 비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안에 설치하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입지, 색채, 외관, 재료 등에 관한 친환경성 심의 규정이 미비하며, 탐방객안내소, 자연/관찰로, 환경·경관 해설관 등 탐방·안내시설이 없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Table 5와 같다.

4. 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Table 5. Pro-environmentally related types and problems in the natural park facilities in Korea

기능	시설 종류	문제점
교통·운송 시설	도로, 탐방로, 삭도, 주차장, 차량통제시설, 헬기장	· 교통 접근시설로 기능분류 필요 · 통과도로 건설로 생물이동 장애 · 탐방로는 자연관찰로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탐방안내시설 종류에 편입 필요 · 삭도 종점 부근 훼손 심화
상업시설	각종 판매시설, 공중위생업	· 도시유원지화로 국립공원기능 정립 장애
숙박시설	호텔, 여관, 유스호스텔, 산장 등	· 덕유산, 지리산, 경주국립공원의 경우 가족호텔의 콘도미니엄 형태 운영으로 공원지정 목적 상치 공공·업무
의료시설	공원관리사무소, 관사, 매표소, 전기/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통제소	· 시설기능에서 공공시설에 의료시설이 포함되므로 의료시설 삭제필요 · 자원봉사자 및 직원숙소 조성 미흡 · 전기통신·기상관측시설 추가 필요
체육·휴양·편익시설	야영장, 어린이놀이터, 청소년수련시설, 광장, 휴게소, 화장실, 급수 및 배수 시설, 파고라, 취사장, 샤워장, 수영장, 승마장 등	· 공원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체육시설(수영장, 승마장, 경마장) 삭제 필요 · 친환경적으로 야영장 정비 필요 · 어린이놀이터, 광장 등은 삭제 필요 · 청소년수련시설은 교육·교화 시설로서 삭제 필요 · 집단시설지구 외 지역에서 주류 및 음식조리 판매 금지 필요
문화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등	· 식물원, 동물원 등 교육용 시설은 도시공원이나 도시 주변에 설치할 시설물임 · 국립공원 전체가 야생동·식물의 자연학습장이므로 조성하는 목적 시설이 되는 식물원, 동물원, 자연학습장 삭제
탐방·안내 시설	탐방객안내소, 대피소, 자연관찰로, 안내표지시설, 환경해설시설	· 자연관찰로 및 부대시설 조성 부족 · 등산로와 자연관찰로의 개념정립 필요 · 탐방객안내소, 자연관찰로, 안내표지시설, 환경해설시설 등 추가 필요
환경기초시설 생태계보호 시설	생물이동통로, 식생녹화 시설, 생물보호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 각 공원 내 통과도로가 많아 야생동물을 위해서 생물이동통로 조성 필요 · 대규모 개발과 답압으로 훼손된 지역에 훼손지 식생복원시설 필요
보호·조경 및 안전시설	교량, 난간, 펜스, 사방시설, 사다리/계단	· 시설기능에서 조경시설 삭제 필요 · 자연공원은 생태계보호와 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림 및 조경시설 등의 항목은 바람직하지 못함 · 공원시설계획, 이용자 편의서비스계획, 공원관리가 조경학 분야이기 때문에 조경시설용어 부적절함
식재	경관식재, 기능식재, 군락식재	· 공원시설물 주위 식재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면서 공원 내 자생식물만으로 식재 필요

* 진한 글씨는 자연공원법상 시설이 필요한 시설기능, 종류임

(1) 공원시설의 종류

① 일부 시설의 삭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상의 시설물 중 국립공원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공원지정 목적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은 삭제가 필요하다.

- 제5호: 체육·휴양 및 편의시설 중 수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제6호: 문화시설 일부(식물원, 동물원, 자연학습장)
- 제7호: 보호·조경 및 안전시설 중 조림 및 조경시설

② 일부 시설의 추가

현행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공원시설의 종류) 제5호(체육·휴양 및 편의시설)상의 편의시설의 시설규정의 예에 탐방객안내소(visitor center), 자연관찰로, 자원해설·안내시설 등 공원자원탐방 안내시설의 추가와 일부 공원시설 종류의 추가 또는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③ 시설기능 변경안

친환경성 제고 및 질 높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의 추가 및 삭제와 연계하여 현재의 시설기능을 Table 6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자연공원법령 개정안

①, ② 항의 삭제, 추가 사항을 포함하여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Table 7과 같다.

(2) 용도지구 내 시설 허용행위

① 자연보존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

군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제1호라목)로서 현재 허용행위는 자연환경지구 허용행위로 조정하고, 대신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경내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매점, 찻집, 음식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변경한다.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제1호나목)으로서 자연보존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중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자연공원법 제16조(용도지구)제2항제1호나목)에서의 '최소한의 공원시설'은 추상적인 문구이므로 환경부령인 현행 동법시행규칙 제6조(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기준)상에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 : '최소한의 공원시설'이란 폭 1.5m 미만의 탐방로와 건축면적 700m² 미만의 대피소, 생태계복원시설 및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말함(환경부, 1998:433)

②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중 명시되어 있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자연공원법 제16조(용도지구)제2항제2호다목)에서의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은 추상적인 문구에 해당됨으로 환경부령인 현행 동법시행규칙 제6조(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기준)상에 별도 항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허용시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 :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1을 말함

1. 영제2조 제1호의 교통·운송에 필요한 시설
2. 영제2조 제4호의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및 부대시설
3. 영제2조 제5호의 휴양 및 편의시설

③ 취락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취락지구 내에서는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있으나 취락지구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만을 설치하며(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은 예외), 기타 공원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다. [예시] :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제외한 공원시설,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생활환경 정비 행위, 이용원, 미용원, 일상용품 판매시설 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등(해상·해안국립공원 밀집 취락지구에서는 공원시설 허용)

Table 6. Amendment proposal for the natural park facilities

현재	교통·운송 시설	상업 시설	숙박 시설	공공·업무·의료 시설	체육·휴양·편의 시설	문화 시설	-	보호·조경 및 안전시설	부대 시설	
시설기능	교통·접근 시설	상등	상등	공공·업무 시설	휴양·편의 시설	탐방·안내 시설	위생처리 시설	생태계 보호시설	이용객보호 및 안전시설	식재 및 부대시설

Table 7. Amendment proposal for the Natural Park Act in Korea to improve pro-environment of the natural park facilities

항 목	법령·규칙	현 행	개 정(신설)	사 유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 안의 우수한 경관, 자연 및 역사적 대상물과 그 안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호대상 구체화 목적 구체화
정의	법 제2조 5호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자원 및 생태계보호와 자원탐방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자원 및 생태계보호시설, 자원탐방편의시설 명시
	법 제2조 7호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을 보호·관리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자연친화적 이용편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자원보호 및 자연친화적 이용편익 서비스 제공 명시
용도지구 허용 행위	법 제16조 2항 4호	“집단시설지구”: 공원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	“집단시설지구”: 공원탐방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	-
	법 제16조 2항 3호	취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가.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생활편익시설에 한하며 설치하며(해상 및 해안공원은 제외), 기타 공원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다.	탐방객편익에 관한 체육, 휴가 및 문화시설은 제외 필요
	법 제16조 12항 1호 나목	1. 자연보존지구 나.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시행규칙 제6조(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기준)에 최소한의 공원시설 범위 규정	자의적 해석가능
	법 제16조 2항 2조 다목	바. 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 및 임도의 설치	- 삭제 -	· 산림법에 의한 행위는 자연성을 해할 우려 ·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
집단시설지구 세분	영 제9조 1항 4호	녹지: 조경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소규모의 공중변소, 안내소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	시행규칙 6조에 허용범위 명시	자의적 해석가능
집단시설지구 세분	영 제9조 1항 4호	녹지: 조경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소규모의 공중변소, 안내소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	녹지: 탐방객 휴양 및 탐방편의도모를 위한 탐방객안내소, 휴게시설 등이 필요한 지역	휴양편의 및 탐방안내시설 설치 지역으로 범위 한정

Table 7. (Continued)

항 목	법령·규칙	현행	개 정(신설)	사 유
	영 제9조 1항 5호	기타시설지: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기타시설이 필요한 지역	기타시설지: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공원자원 및 생태계보호 및 탐방객 편의도모를 위한 기타시설이 필요한 지역	기타시설의 범위 한정
용도 지구 행위 기준	규칙 6조 1항 1호	- 신설 -	①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의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의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2조의 탐방안내시설 2. 건축면적 700m ² 미만의 대피소 3. 생태계보호시설 및 사업 4. 이용자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최소한의 공원시설범위규정 필요
	규칙 6조 1항 2호	-	③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2조의 교통·접근시설 2. 영 제2조의 공공업무시설 3. 영 제2조의 휴양편익시설	-
공원 시설	영 2조 1호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교량·케도·삭도 및 자동차 선박 헬리콥터 등에 의한 교통 운송에 필요한 시설	도로, 교량, 터미널, 주차장, 헬기장, 차량통제시설 등 교통·접근시설	우리 나라 지형에 부적합한 삭도, 케도 삭제
	영 2조 2호	기념품 탐방용품 및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약국, 식품점, 객업, 조리판매업, 목욕장업, 이용 및 미용업에 공하는 시설, 유키장, 실내공연장 등의 상업시설	탐방객 편의도모 및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 상업시설	유키장, 실내공연장 등 유흥행락시설 삭제로 공원기능 회복
	영 2조 4호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 등의 공공시설과 은행, 병원 등의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공원관리시설, 매표소, 전기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관리통제소, 공공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공공 업무시설	-
	영 2조 5호	수영장, 승마장 등의 체육시설(골프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과 선유장,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공중변소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야영장, 휴게시설, 화장실, 급·배수시설, 취사장, 샤워장 등 휴양편익시설	자연공원 지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체육시설은 삭제하고, 일부시설은 탐방안내시설, 환경기초시설에 편입

Table 7. (Continued)

항 목	법령·규칙	현 행	개 정(신설)	사 유
	규칙 2조	-신설-	법 제2조 제7호, 영 제2조에 의하여 허용하는 공원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규칙에 허용하는 공원시설물 명시
영 2조 6호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삭제-		자연공원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연시설 폐지하고 일부시설은 탐방안내시설에 편입
영 2조 6호	-신설-	탐방객안내소, 대피소, 박물관, 보행로, 안내표지시설, 환경해설시설, 조망시설 등 탐방·안내시설		탐방편익서비스시설 보완 및 확대 필요
영 2조 7호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림 및 조정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환경을 조성하며,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조경 및 안내시설		교량, 난간, 사다리, 사방시설 등 이 용객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공원지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림 및 조경시설 삭제
영 2조 8호	-신설-	쓰레기 오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위생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신설 필요
영 2조 9호	-신설-	생물이동통로, 식생복원시설 등 생태계보호시설		생물자원 및 생태계보호·관리시설 필요
영 2조 10호	제1호 내지 제7호 시설의 부대시설		시설물 주위식재 및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시설	시설조성으로 훼손된 곳이나 시설물 주위 필요

(3)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세분중 녹지란 '조경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소규모의 공중변소·안내소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규정은 녹지의 대상지역을 공공시설지의 일부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공시설 지역 외에 필요시 전체 집단시설지구(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공공시설지, 기타시설지, 유보지 등)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4) 시행규칙상 시설물 신설 권고

Table 7상의 공원시설 항목 규칙 제2조 신설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도록 제안된 시설물 종류 예시는 Table 8과 같다.

결 론

자연공원시설의 현황과 관리의 현 추세는 시설물 설치를 유도하는 관련 법규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각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시설 설치의 목적을 이용 위주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선진형 개념으로 전환시키면서 접근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며(오구균 등, 1999 ; 신익순, 1999 ; 油井正昭, 1987), 특히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보전의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이는 것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국토환경보전에 기여 하리라 판단된다.

향후 자연공원시설의 종류와 체계의 정비가 필요 하고 이에 따른 자연공원법등의 관련법규, 각 공원관리청의 관련규정 및 편람 등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자연공원시설의 친환경성을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공원시설의 종류에 비지타센타와 자연탐방

Table 8. Amendment proposal for enforcement regulation sec.2 of Korean Natural Park Act related to natural park facilities

(현)시설기능	(개정)시설기능	시설종류	시설물
교통운송시설	교통·접근시설	도로시설 터미널시설 항공시설 차량통제시설	접근도로, 서비스도로, 교량, 주차장 등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부두, 선착장 등 헬기장 블라드, 차단기, 차량통제책
상업시설	상업시설	판매시설 생활편의시설	기념품판매점, 일상용품판매점 약국, 음식점,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등
숙박시설	숙박시설	-	호텔, 여관, 유스호스텔, 산장 등
공공·업무 ·의료시설	공공·업무 시설	공원관리시설 대표시설 전기·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관리통제소 공공시설 공공편의시설	관리사무소, 분소, 관사 등 통나무대표소, 조립식대표소, 소형대표소 전봇대, 가로등, 전기 통신케이블, 방송시설, 발전시설 등 홍수통제시설, 기상측정시설, 백엽상, 풍향계 등 산불통제소, 탐방객통제소, 물품보관소 등 우체국, 파출소 은행, 병원, 약국
체육·휴양 ·편의시설	휴양·편의 시설	야영장 휴게시설 화장실 급·배수시설 취사장 샤워장	정자, 휴게소, 그늘시렁, 벤취, 야외의자, 피크닉테이블, 환경조형물 등 공중변소(수세식, 수거식, 발효식), 간이변소(발효식, 수거식) 등 음수대, 웅달샘, 물탱크, 펌프장, 정수시설 등 - - -
문화시설	탐방·안내 시설	탐방안내소 대피소 박물관 보행로 안내표지시설 환경해설시설 조망시설	등산로, 자연관찰로, 역사탐방로 등 종합안내관, 공원구역안내관, 지구세부안내관, 계도안내관, 요금안내관, 명소안내관, 시설안내관, 이정표, 출입표식시설 등 경관해설관, 환경해설관, 역사해설시설, 동식물해설관, 식물표찰, 기타 전망대, 망원경 등
	위생처리 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집하장, 폐기물수거함(쓰레기봉) 등 오수종말처리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태보호	식생복원시설 생물보호시설	지형기반안정공, 식생복원공, 생태계복원공, 사면보호공 등 생물이동통로, 펜스, 철망, 철조망, 목책, 경계석, 로프웨이, 생물보호안내관 등
보호조경 및 안전시설	이용객보호 및 안전시설	이용객 안전시설 사방시설	교량(철재교량, 목재교량, 콘크리트교량 등), 난간(가드레일, 목책/로프웨이, 철재난간 등), 사다리, 계단, 대피소 등 낙석방지시설, 흠막이, 배수시설, 계류댐 등
부대시설	식재 및 부대시설	식재	경관식재, 기능식재, 군락식재

* 참고 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시설편람 시설명칭 사용
2. 진한 글씨는 추가된 시설 종류임

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본의 예처럼 답압으로 훼손된 등산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복원시설 및 생물이동통로·식생녹화시설 등의 생태계보호시설을 법제도권내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용문헌

노철현(1995) 국립공원 기능정립을 위한 공원시설 관리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2쪽.
 박소영(2000) 야생동물 서식지 적합도 예측에 관한 연구 -지리산지역의 반달가슴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68쪽.
 신익순(1999) 우리나라 국립공원 자연탐방시설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 자연탐방·학습시설에 관한 워크숍, 22-25쪽.
 오구균, 권태호, 신익순 등(1999) 생태계보전을 고려한

공원시설물의 정비 및 조성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344쪽.
 오구균, 이경재(1996) 한국 국립공원의 위기. 광일문화사, 135쪽.
 이제화(1993) 국립공원의 자연탐방시설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6쪽.
 환경부(1998)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직성. 490쪽.
 U.S.D.I. NPS.(1992) Acadia National Park, Maine, U.S., 99pp.
 U.S.D.I. NPS.(1988) Management policy, U.S., 99pp.
 國立公園協會(1994~1995) 日本國立公園 雜誌 pp. 525~537pp.
 油井正昭(1987) 國立公園と國定公園内の自然研究路に關する研究., 千葉大學園芸學部學術報告 39:37-52.
 蔡佰祿(1997) 陽明山國家公園管理處 業務簡報. 21pp.
 環境廳(1996) 國立公園內(普通地域を除く)における名種行為に關する 審査指針について.